

부속서 3-라-1  
제3.19조에 따른 인증수출자 신고서

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(세관인증번호.....<sup>1</sup>)는,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, 이 상품이 특혜원산지 <sup>(2)</sup> (장소 및 우편번호<sup>3</sup>) 상품임을 신고한다.

---

<sup>1</sup> 수출국에 의하여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

<sup>2</sup> 원산지 국가, 즉 한국 또는 이스라엘

<sup>3</sup>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생산이 발생한 장소(우편번호를 포함한다)